

간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책임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apan's Responsibility for the Gando Problem

조 병 현*

Cho, Byung Hyu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간도 인식과 개입과정을 분석하여 간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여 우리 정부의 간도문제와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일본은 간도를 한국 영토로 초기에는 인정하고 간도문제에 개입하였으나, 중국과 협상과정에서 간도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책임은 첫째, 간도의 중국 양도와 패망 이후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다. 두 번째, 간도 조선인의 고통과 일제강점기 잘못된 역사교육에 대한 책임이다. 세 번째, 일본의 만주국 경영으로 만주를 중국영토로 인식하게 한 책임이다. 네 번째, 남북분단 원인 제공으로 한국이 간도회복을 위한 기회를 차단한 책임이 있다.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첫째,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 추진과 함께 일본 정부에 간도문제를 중국에 제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어 : 간도, 간도문제, 간도협약, 일본의 책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on Gando by analyzing Japan's perceptions about Gando and the process of Japan's intervention in the Gando problem, and identifying Japan's responsibility for the Gando problem.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found that although at first, Japan intervened in the Gando problem with recognizing Gando as the Korean territory, it concluded the Gando Convention with China and surrendered Gando to China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for the sake of its own benefits, rather than solving the Gando problem fundamentally. As for Japan's responsibility for the Gando problem, first, Japan has the responsibility for having surrendered Gando to China and not having taken measures after its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Second, it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suffering of Joseon people in Gando and the education of wrong histor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ird, it has the responsibility for having made Manchuria be recognized as the Chinese territory through its control of Manchukuo. And fourth, it has the responsibility for having given cause for the division of Korea into south and north and blocking the opportunity for Korea to restore Gando.

* 정회원·북한토지연구소장(E-mail: bhcho815@hanmail.net)

Conceivable Methods for holding Japan responsible include first, making diplomatic efforts to have the Japanese government raise the Gando problem to China, together with the promotion of the 'joint declaration of Korean and Japanese intellectuals,' second, claiming compensation from Japan, and thir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Keywords : Gando, Gando problem, Gando Convention, Japan's responsibility

1. 서 론

간도(間島)는 1904년 9월 4일 일본과 중국이 체결한 간도협약(間島協約)으로 영유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 땅으로 우리가 개간하여 대한제국 시기까지 관리한 우리의 영토이다. 현재도 지리적 동질성과 함께 우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2백만 우리 동포가 사는 이웃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적학적으로 볼 때 우리 영토가 틀림없다.¹⁾

일본은 정한론(征韓論)과 만선사관(滿鮮史觀)을 내세우며 한반도 침략을 시도하였다.²⁾ 1869년 판적봉환(版籍奉還, 한세키호칸)³⁾에 의한 대마도 침탈과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하고, 1909년 불법으로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그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병하고, 1932년 만주국(滿洲國) 괴뢰정부를 설립하여 간도지역을 통치하였다. 만주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이 항복한 날인 8월 15일에 소멸하였고, 간도의 대부분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에 포

합되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충성없는 영토전쟁 중이다. 일본은 센카쿠열도(尖閣列島)에서 중국과, 쿠릴열도(Kuril列島)에서 러시아와 충돌하고 있으며, 남동중국해에 미국이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남북한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정부는 통일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은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통일은 온다. 통일이 되면 반드시 간도 문제가 한중간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간도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1951년 중일평화조약(中日平和條約)을 체결하여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면 1909년 체결한 간도협약은 1941년 12월 9

-
- 1) 조병현, “지적학의 접근방법에 의한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7.
 - 2) 정한론은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정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조선(朝鮮)에 대한 공략론(攻略論)이며, 만선사관은 20세기 초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한국사에 대한 관점으로, 만주와 조선의 역사는 하나이며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는 만주에 종속적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만선사(滿鮮史)는 중국의 만주에 대한 영향을 제한하였고,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와 만주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만선사관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등이 있다. 두산백과, 위키백과 참고 작성.
 - 3) 판적봉환은 근대 일본의 중앙집권 정책 중 하나로서, 다이묘들이 토지와 백성을 메이지 천황에게 반환한 것을 말한다. 1869년 3월 2일 판적봉환 건백서 제출을 시작으로 1870년 8월 끝났다. 대마도는 1869년 판적봉환에 의거 일본이 무력으로 강점한 곳으로 무려 4,000여년을 우리나라가 지배하다가 불과 150여년을 일본이 지배했다는 이유로 판적봉환이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용우·김태식, “문화적 접근에 의한 대마도(對馬島)의 영토 근거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1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8, p.99, 참고 작성.

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이지만,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도문제는 영유권 해결을 위한 간도협약의 책임규명과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 해결과 협상의 당사자 문제,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의 승계문제 등 복잡한 양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본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도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사항인 간도협약의 당사자로서 우리 땅 간도를 중국에 양도한 일본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간도문제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지만,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일본의 책임 또한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도협약에 의하여 우리 땅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일본의 책임에 대해 문제를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한다. 일본은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을 다하기 위해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표명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제국주의 야욕을 버리고, 과거사 반성과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도협약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일본에게 입장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본 책임론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간도에 대한 인식과 간도문제에 대한 개입 과정, 간도문제의 일본 책임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살펴

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간도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책임론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의 간도인식과 개입과정, 간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간도문제와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는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주사 연구를 시작한 1892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와 간도, 일본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간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의식과 개입, 책임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지적학적 접근방법과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인터넷조사법과 문헌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기술적분석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일본의 간도 인식

일본 역사학자들은 만주 침략을 목적으로 만주사(滿洲史) 연구를 시작하여 1892년에 역사가 하야시 다이호(林泰輔)가 <조선사>를 편찬하여 만주 역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구려사와 발해사는 ‘만주사’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만주가 중국 땅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니기 때문에, ‘만주 침략’이 아닌 ‘만주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인 없는 신대륙에 진출한 것 같은 이미지를 조성해 나갔다.⁵⁾

4) 일본의 책임과 관련한 논문은 조병현, 2013. 9. 7 제8주년 간도의 날 기념 강의자료 「간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과 박선영 교수의 2009년 「간도협약 100년 회고와 일본의 책임론-근대 변경 역사와 동아시아평화협력 방안-」 및 2009.8.22. 제3회 역사 NGO 세계대회 세미나,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박선영, 「간도협약 100년 회고와 일본의 책임론, 간도협약의 역사적 쟁점과 일본의 책임」, 2009.12, 「중국사연구」, 제63집, pp. 167-201.이 유일하다. 박선영은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간도지역을 배제한 국경선 문제로 귀착시킴으로써 파생된 문제와 간도 지역 조선인의 법적 지위문제 등을 야기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5) 우리 입장에서는 고구려사를 한국사에서 배제한 것이므로 ‘일제시대 판 동북공정’이라 볼 수 있다. 동북공정의 원조는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라 할 수 있다.

하야시는 한사군(漢四郡) 설치 이후의 한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백제도 한국사에서 제외하고, 고조선이나 삼한(三韓)을 중국의 식민지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한국사 인식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나 만선사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08년부터 만주침략기구 중 하나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도쿄지사의 부설기관인 ‘만선(滿鮮)역사지리연구실’에서 만주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만주사 연구를 만주 침략의 일환으로 치밀하게 진행한 것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동경대교수 나이토를 외무성 촉탁으로 고용하여 일본정부의 간도문제 인식을 대변하도록 하였다. 한중 양국 간에는 명나라 이전에도 간도지방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였고, 조선 태종 때 간도지역이 여진족에게 점령된 적도 있었지만 4진과 6진을 설치하여 고토를 회복하여 두만강 동북의 여진족은 한국영토인 간도지역에 내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간도지방의 개척에 관해서도 한인이 청국인보다 빨랐다고 밝혔다.

그리고 1627년 유조변책(柳條邊柵)에 의한 공광지대(空曠地帶) 설정은 조선의 고토에 대한 청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조선은 하국으로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했다. 사실, 공광지대도 역사적으로 조선의 고토였고, 지리적으로 간도에 근접하기 쉬워 한인들이 많이 들어갔으나, 중국은 공광지대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립도 청국이 두만강을 자연경계로 했지만, 사실 간도지방의 지리에 어두웠기 때문에 토문강을 두만강의 강원으로 오인,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1936년 이후의 관선서적에 토문강과 두만강을 동일한 강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1885년 청한 울유감계교섭(乙酉勘界交涉, 1차 국경회담)에 관해서는 청국 측의 토문=두만의 동일 강 주장에 대해 조선 측은 끝까지 토문강과

두만강은 별개의 강으로서 토문강이 양국 국경임을 고수했으며, 1885년 청한 정해감계교섭(丁亥勘界交涉, 2차 국경회담)에 관해서는 청국은 두만강 상류에 관해 조선의 홍단구(紅端水) 주장을 무시하고 유민문제는 이미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석을수(石乙水)를 경계로 설정했으나, 최종적인 감계교섭은 성립되지 않았다. 청일전쟁 이후 한국정부는 한청조약(한중수륙통상장정) 제12조에서 청국의 변발강요 문제에 항의하여 그해 7월 23일 한국 내부가 이범윤을 파견하여 간도조사 및 한민보호를 명했고, 간도에 ‘군(郡)’을 설치하였다. 1904년 6월 15일 한청 양국은 선후장정 12조를 의정하여 “양국 경계는 백두산정계비의 기록을 그 증거로 한다(제1조).”고 했다. 이와 같이 나이토교수는 학자의 양심으로 간도문제의 본질을 중립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간도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간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영토의 영유권주장 논리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오라총관 목극등(烏喇總管 穆克登)은 두만강의 수원을 오인하여 토문강으로 했는데, 양국은 두만강을 경계로 하려고 했으므로 토문과 두만을 동일 강으로 주장한 청국의 입장은 곡해가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이중하(李重夏)는 한국이 석비 동쪽에 두만강으로 연결되는 토퇴, 석퇴, 목책을 설치하고 국왕에게 비밀리에 상소했으며, 또 목극등이 오인한 수류(토문강)로 정하려 했으나 청국측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고 논리를 세웠다.

1886년 양국의 교환문서에 의하면 간도문제는 두만강수원의 문제였고, 1887년 감계담판에서 강압에 의해 두만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도 기정사실로 수용했고, 이후 감계담판도 두만강 상류에 관한 논의로서 종전에 합의한 내용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다시 논의한 것이 아니다. 토문이 송화강 상류라고 하여 토문이 두만이 아니라는 한국측 주장은 지극히 이유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

었지만, 두만강 경계를 인정한 것이고, 그 이후의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00년이나 지난 1712년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간도에 대한 인식은 간도영토분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이미 간도를 청국에 양보하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통감부 파출소(統監府派出所)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간도를 한국영토로 회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감부파출소는 외무성의 간도영토 포기 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박하였다. 이중하가 비밀복명서를 통하여 석퇴와 토퇴가 목책으로 이어져 홍토수에 연결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청국측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해 도저히 토문강 주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고, 이는 두만강 상류의 홍토수로 양보한 것을 국왕과 주민에게 변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1885년 답판에서는 토문강설을 주장하면서도 청국의 철저한 강압에 의해 향후 토문강설 주장의 어려운 점을 사전에 국왕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중하의 홍토수 주장은 청국의 강압에 의해 부득이 내린 판단이었으나, 두만강 상류문제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최종적인 합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통감부파출소는 간도가 한국영토라는 한인의 다년간 주장을 외교수단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은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하여 석비에서 발원하는 토문강 이남의 강토를 조선영토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처음에는 한국 영토를 인정하였으나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통감부파출소에 근무한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는 “간도는 만한 양국의 어느 편의 영토도 아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중립지대이

었지만 역사적으로 압록강 대안을 포함해서 공광지대(空曠地帶)였기 때문에 이미 청국이 압록강 대안을 영토화한 이상, 두만강 대안은 한국영토가 되는 것이 공평한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중국으로부터 분할 가능한 ‘동간도’ 지역으로 한정하여 한국영토라고 주장하였다.

통감부파출소 요원이 2년간 한국인이 주장해온 한국의 영토설에 입각하여 두만강 이북을 완전히 청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청국에 대해서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감부파출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이웃나라의 역사까지 마음대로 왜곡하는 일본의 잘못된 인식과 만주를 전부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 간도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졌다.

3.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 실태

일본은 1858년 미국에 의해 개항을 강요당했고, 1876년 자신들이 당했던 것을 똑 같이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조선 침략을 본격화 하였다.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을 성공시킨 이후 근대화를 이루며, 제국주의적 대외진출을 도모하였다. 1876년 2월 27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규)를 체결하여 부산·인천·원산을 개항시키고, 조선 해안 측량을 허용받아 우리 해안에서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상륙지점에 대한 정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⁶⁾

일본은 1871년에 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여 화친관계를 맺고, 1882년 입오군관과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거치면서 조선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1894년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

6) 이후 일본은 우리 나라 전역에 걸쳐 잠입도측(潛入盜測)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조선 잠입도측은 조선 침략의 교두보로서, 일제는 오래전부터 정한론에 의해 계획되고 있었다. 19세기 말 형성된 일본의 제국주의 영토확장정책의 희생양으로 조선 병합의 출발선으로 작용하였다. 허종구·이범관·김홍택, “일제에 의한 조선 잠입도측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8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2, p.109-125. 참고작성.

動)을 계기로 조선에 다시 파병하여 갑오개혁을 강요하고, 조·청간에 맺은 통상무역장정(通商貿易章程)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내정 간섭을 도모하였다.

1903년 조선조정은 이범윤을 정식으로 북간도 관리사로 임명하고 청국공사관에 통보했다. 이범윤이 간도 거주 한민의 도움으로 사대포를 조직하여 청국의 행정관할에 대항했기 때문에 소규모 충돌이 반복했다. 일본은 1903년 5월 한·중간에 간도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러시아가 간도분쟁에 개입하여 간도에 대한 이권에 관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내정간섭은 1904년 2월 러일전쟁 중 한국정부에 국경문제 교섭 중단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명분은 러일전쟁 경과를 보고 일본의 중재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일본이 조선과 만주에 있어서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러일전쟁을 일으킨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독점적으로 조선과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청은 국경문제 대해 러일의 간섭을 우려하여 국경회담을 계속 진행하기를 원했다. 청은 순전히 한국과 중국의 문제라고 하면서 월강중단(越江中斷)과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소환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였다.

일본은 1905년 3월 간도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자 간도 명칭의 유래와 조선인 거주 상태, 한국의 대간도 정치, 청의 통치 상황과 한청의 두 차례 감계 담판, 간도의 가치문제 등을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러일전쟁이 종결되자 일진회는 1905년 10월 회령을 방문한 조선주차사령관 일본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를 채택하고,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각의 결정에 따라 1905년 11월 17일 군대를 서울에 파견하고 고종황제를 방문하여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압에 의한 을사늑약으로 조선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청국에 대해서도 12월 22일 ‘만주에 관한 일청조약(滿洲ニ關スル條約)’을 체결하였다. 이때에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등의 자문으로 청국에 대해 간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하여 간도를 청국영토에서 분리하여 일본이 통치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한편, 1905년 12월 20일 한국주찰사령부는 “두만강을 두고 토문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간도 거주 한인의 견해를 담은 <간도경계조사재료(某韓人ノ談)>을 작성하였다.⁷⁾

1906년 2월 낭인 나카이 경조(中井錦城)는 간도를 탐험을 시도했다. 동시에 1906년 4월 일본 육군 참모총장 코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도 간도문제를 조사하였고, 이를 사이온지 킨모치(西園寺公望) 총리에게 제출하여 간도문제에 개입할 것을 종용했다. 1906년 초에는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의 지시로 내등호차랑(内藤虎次郎)은 간도문제를 조사하여 <한국동북방계고략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⁸⁾ 이 보고서는 명대 이전의 경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한청국경 교섭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리하면서 한청 양국의 상하관계 때문에 간도지방이 조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간도를 영토로 주장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⁹⁾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도 1906년 5월 22일 간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만주문제협의회’를 만들어 간도문제를 논의했고, 7월에는 주한공사에서

7) 길전육군대신비서관, 간도경계조사재료(某韓人ノ談) 명치38년 11월 24일(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40131500).

8) 내등호차랑, 「내등전집」, 제6권, 「축마서방」, 1972, pp.509-543. 참고작성.

9) 박선영, “간도협약 100년 회고와 일본의 책임론, 간도협약의 역사적 쟁점과 일본의 책임”, 「중국사연구」, 제63집, 2009, pp.167-201.

주정공사로 내정된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이토 통감에게 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하여 청국의 관할에 대응하여 일본의 행정조치를 취하면 청일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일본과 중국의 중앙정부간에 간도 영토문제를 협상하여 간도의 일부를 일본이 분할 접수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간도 영토정책안을 제안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은 본격화되었다. 일본의 대륙낭인들 사이에는 간도지역을 취하여 일본의 대륙침략에 요충지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통감 이토가 독일로 통감대리를 맡고 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주차사령관은 1906년 11월 18일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명의로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의 보호를 공문으로 통감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주한청국영사 마정량(馬廷亮)에게 간도문제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토 통감은 12월 11일 간도 현지에 한일 군경으로 구성된 문무관을 파견한다고 하는 ‘간도독무정제’에 의한 간도영토정책안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1907년 2월 8일 일본정부 각의의 동의를 받아내었다.¹⁰⁾

그리고 주한공사 하야시는 정부요인을 설득하면서 이토 통감에게 간도 영토화 정책을 건의하자 이토 통감은 만주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간도국경문제 해결과 만주정책을 고심한 끝에 통감부와 외무서에서 간도문제 개입을 위한 조사연구를 착수하도록 하였다. 통감부는 1907년 3월 간도에 파견할 청설사무소를 도쿄에 두고 소장으로 사이토(齋藤), 총무과장으로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를 내정하고 간도지방을 사전에 밀탐하도록 했다. 이토 통감의 명령을 받은 시노다는 3월 경성(서울)에 들어와 간도지역을 밀탐한 상황을 통감에게 복명하고 장래의 방침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였다.¹¹⁾

첫째, 한민보호에 중사하는 관청의 명칭을 ‘통감부파출소’라고 하고, 그 위치는 간도의 중심에 해당하는 남강(南崗)의 서부인 마안산(馬鞍山)의 남방 평지 내에서 찾는다. 둘째, 통감부 파출소는 교통이 불편하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멀리 벽지에 두고 특수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권한을 넓혀서 사정에 따라 임기 재량을 발휘하기 위해 당분간은 한국정부로부터 간도 가정 지역¹²⁾ 내의 한국인민을 통괄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 셋째, 당분간은 청국정부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분쟁을 만들지 말고, 회유하는 방법을 찾고, 간도는 한국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국에 대응한다. 다섯째, 간도 개발은 청진을 개항하고, 일본 내지와 연결할 수 있는 법을 간소화하여 일본상품을 수입하고 곡물류 및 광물을 수출할 것, 간도 내에 경철도 가설과 청진-회령간의 경편철도의 순차적 개축 및 통감부파출소 설치할 곳의 시가건설을 준비한다.¹³⁾ 즉, 한민보호를 명목으로 통감부파출소를 설치하고, 이곳을 조선과 일본 본토와 연결하여 식민지로서 일본에 유입시킬 원료 생산지로서, 일본상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간도지방을 한국영토로 전제하여 식민지로 개척하여 미래에 일본 내지-조선-간도로 연결하는 본거지로 건설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1907년 11월 15일에는 서한을 보내 승문원에 보관하고 있는 간도관련 자료 목록 제출을 요청하였고,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李完用) <동문휘고(同文彙考)>에 나와 있는 과거 한청 양국간 왕복문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¹⁴⁾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07년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청의 충돌을 피하고자 간도파출소 설치 경위를 청국주재 일본대리공사에게 청국

10) 최장근, 『한중국경문제연구-일본의 영토정책사적 고찰-』, 백산자료원, 1998. pp.397-403.

11) 시노다 지사쿠, 『간도문제의 회고』, 『백두산정계비』, 약량서원, 1936, pp.293-294.

12) 통감부가 청국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서 일명 ‘동간도’라는 지역이다.

13) 시노다 지사쿠, 전게서, pp.293-294.

14) 박선영, 전게서 pp.169-170.

외무부에 통고하도록 하였다. 간도의 소속이 미정이나 10만여 명의 한인보호를 한국정부로부터 의뢰받아, 통감부 직원을 파견한 것이므로 간도에 주재하는 청국관헌에 착오가 없도록 청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다. 1907년 8월 23일 용정에 본부를 두고 간도를 장차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제국과 한민의 생명재산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이 당면의 책무라고 하면서 간도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간도파출소는 간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역사연구와 함께 현장답사, 도지연구, 관련자 면접 등을 실시하여 청과 협상에 대비하였다. 하야시는 간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외무성에 적극 설교하여 각의동의를 받아냈다. 일본도 간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청국은 간도파출소의 교변초소 설치를 방해하면서 간도 각 요충지에 파변소를 설치하고, 1908년 간도지방의 미곡이 조선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곡령을 공포하고, 1909년에는 염전매매를 시행하여 사적인 매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강력하게 대항했다. 종전에는 간도를 분쟁지역의 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인보호 명목으로 간도 행정을 시행했지만, 방침을 바꾸어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서 간주하고 청국에 대항했다. 이에 대한 실무조치로 간도의 한국인은 청나라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발표하고, 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종과 청의 법령에 대한 일체 불인정, 청이 임명한 도향약, 향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한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연구 결과와 조치는 한국 주장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된다. 이토 통감은 청국 외무부 경친왕(慶親王)과 원세개(袁世凱)에 친서를 보내어 일청간의 간도문제 교섭을 요구했다. 1908년에는 통감 이토는 거주한민에 대한 청국의 변발청장

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항의했다.

당초, 청은 일본과 교섭을 거부하고, 간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일본이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제소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한인보호와 민의의 상달을 위해 간도구역을 북도소, 회령간도, 경성간도, 무산간도 등 4개처로 구분 관리하였다. 각 구역마다 도사장 1명을 두고 다시 이를 41개사로 나누어 사장을 두고 또 이것을 290촌으로 나누어 각각 촌장을 두었고, 헌병·경찰의 분견소를 당초 7개소에 두었으나 새로이 팔도구, 걸만동, 동경태 등 7개소를 증설하였다. 그리고 보통학교 설립과 위생시설 및 통신·교통기간의 정비, 농업개량, 지질 및 광산물 조사와 시장을 개설하는 등 간도경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¹⁵⁾ 반면, 청은 간도파출소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일본에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일본을 교섭상대로 불인정하였다. 두만강 이북 일대의 지방은 청조 조상의 발상지라 하여 완전한 자국영토라는 전제하에 행동하였다. 특히 변무독판(邊務督辦) 오록정(吳錄禎)은 영토주의 강행으로 맞섰다.

당초 일본은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나, 표면상으로는 간도가 소속미정의 땅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된 일본은 1909년 3월 1일 회의에서는 간도 지역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재판관할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¹⁶⁾ 그리고 간도파출소는 1909년 8월 3일에 간도를 ‘금후 한국영토로 확정하고 대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통감부에 병력증파를 요구하였다.¹⁷⁾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 대하여 청국은 영국과 미국인 고문의 자문으로 만주에 관한 일청육현안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ICJ)의 중재 요청을 신청하였다.¹⁸⁾ 일본은 청국의 중재재판

15) 이러한 간도경영조치와 함께 간도파출소에서는 간도내의 항일세력을 감시하는 한편 호구조사 실시와 반일 민족 교육의 규제 등도 병행 추진하였다.

16) 만주현안제철회회의(간도잡거한민二對スル 재판관할권등)ノ模樣報告ノ件, 일본외교문서, v.42-1, pp.240-242.

17) 양태진, 「우리나라 영토 이야기」, 대륙연구소출판부, 2007, pp.1-256.

회부에 대한 항의와 동시에 미국과 영국공사에게 훈령하여 청국의 중재재판회부 조치의 부당성을 본국정부에 설득해줄 것을 요청하여 간도문제 교섭은 잠정 중단되었다.

일본은 ‘한국영토권성명’으로 청과 잦은 충돌이 발생하자 간도문제의 국제화를 우려해 1908년 9월 25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간도영유권 양보를 결정하고, 동삼성육안(東三省六案)을 제시하여 일괄타결을 시도하였다. 일본이 각의에서 간도양보 방침을 결정한 배경은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남만주 이권을 둘러싼 청일간 대립이 일본의 동북 침략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다.¹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도에서 간도영유권 및 간도문제를 조사 연구한 간도과출소 소장을 비롯한 소원들은 간도가 청의 영토로서의 근거보다 한국영토로서의 근거가 더 많다고 판단하여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청 양국의 중앙정부는 만주6현안 해결이라는 정치적인 대타협을 이루어 내기 위해 1909년 9월 4일 간도를 포기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만주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중국에 양도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간도협약으로 한중간에 근대적 국경선이 처음으로 결정되었다.

간도협약에 대해 시노다는 그의 회고록인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에서 “실로 태산명동해서 한 마리의 생쥐가 된 기분이다. 대국적 타산에서 상호 양보의 정신으로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만주 제 현안 때문에 희생되어 간도에서 엄청난 양보를 해버린 것은 2년여 동안 장대한 희망을 걸고 활동해 온 이들에게는 실로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개탄하였다. 이와 같이 시노다 지사쿠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일방적으로 체결된 간도협

약에 관해 무효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시노다 지사쿠는 일본으로 복귀한 후 외무대신 ‘고무라’를 방문하여 간도협약에 대하여 항의했다. 이에 대해 고무라는 “일본이 간도를 양보하면 만주 현안을 일본의 주장대로 모두 승인하겠다.”는 청의 답변에 대국적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²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은 간도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간도를 중국으로부터 분할 통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감부과출소가 간도에 들어갈 때는 청국의 방해를 우려하여 소속의 미정의 땅이라는 논리를 세웠다가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국영토라고 강도를 높여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간도지방의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간도과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를 경영했지만, 실제로는 한인을 보호하지 않고, 한인을 감시하고 이용하여 간도를 차지하려고 했다.²¹⁾

간도협약은 일본과 중국에 의해 유효론과 무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1915년 중국과 “남만주, 동북내몽골에 관한 조약 및 교환공문(滿蒙協定)”을 체결하여 남만주와 내몽골 지역에서 일본인의 치외법권을 인정받게 되자 간도지역의 조선인도 해당되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간도협약의 무효론을 제기하였다. 처음에는 만몽협정에 의해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국은 영토주권을 일체에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간도협약의 유효론을 주장하여 일본과 중국이 맞섰다. 일본은 각의에서 상황에 따라 두 조약 다 활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토지상조권과 영사재판권은 만몽조약에 따르고, 토지소유권은 간도협약에 의거 행사하도록 기본 방침을 결정하였다.²²⁾

18) 1909년 3월 24일 『런던타임즈』 보도.

19) 이규수, “일본의 간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통감부 임시간도과출소”, 『담론 201』, 제9권 제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p.82.

20) 시노다 지사쿠, 신영길 역,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2005, pp.1-333.

21) 최장근, 간도의 중국관할 경위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의 간도론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49권, 2015, pp.269-292, 참고 정리.

이후 일본은 만주국을 설립하여 만선사관의 꿈을 이루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간도는 중국에 귀속되어 오늘까지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4. 간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일본은 간도를 청국으로부터 분할 통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간도문제에 개입했으며, 만선사관에 의하여 만주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대륙침략의 일환으로서의 만주경영에 긴요한 철도부설권 및 지하자원 개발권 등의 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간도 영유권이 청국에 귀속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오랫동안 토문강 국경설을 주장한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되고 말았다. 한·청간의 을유·정해감계회담이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배제하고 간도를 청국의 영토로 양여한 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한행사로 간주될 수 없다.

일본의 주장과 같이 간도협약이 간도의 한인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한인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모든 한인들을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간주하여 일본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구실이었다.²³⁾ 이 같은 일본의 태도는 한국민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간도협약은 1910년 한일합방과 1912년 청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일양국간에서 새로운 교섭 없이 묵인되어 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간도협약과 맞교환한 만주5안건(만주협약)은 모두 무효가 되었는데 간도협약만 무효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1951년 중일평화조약에서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

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다”에 의해서 을사늑약 효력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근본적으로 무효인 간도협약으로 간도가 중국에 넘어갔지만,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물론 간도문제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우리 정부에 있지만 일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간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책임은 첫째, 간도의 중국 양도와 패망 이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책임이다. 원천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이므로 간도협약 이전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중국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1951년 체결한 중일평화조약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 1945년의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에 의거해도 1909년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 강도회맹(江都會盟)으로 회귀하여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될 수 밖에 없다.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일본의 책임 회피에 그 원인이 있다.

두 번째, 간도 조선인의 고통과 일제강점기 잘못된 역사교육에 대한 책임이다. 한일병탄으로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더욱 강경하게 조선인의 국적편입, 조선인의 법적지위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조선인으로서 정체성 상실과 토지를 약탈당하고, 무국적자 전략으로 인권 침해와 유린을 당해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간도협약으로 영유권문제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법적 지위도 취약하게 만들어

22) 신규섭, “帝國日本の民族政策と在滿朝鮮人”, 박사학위논문, 동경도입대학대학원, 2002. pp.43-44. 참고정리.

23) 양태진, 전개서, pp.1-256.

인권을 유린한 책임을 일본은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간도가 우리 땅인지 잘 모르도록 잘못된 역사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은 한국 역사를 모르게 하라”는 조선총독부 방침에 따라 역사서 51종 20만권을 회수하여 불 태우고, 반도 사관에 의해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영토로 교육하였다. 아직도 반도사관에 의한 역사교육으로 간도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일본의 만주국 경영으로 만주를 중국 영토로 인식하게 한 책임이다. 중국이 간도를 점유한 이후 줄곧 중국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 국내·외의 대백과사전과 세계지도, 인터넷 정보 등에 간도를 중국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대부분 지리교과서는 한국의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고 있으며, 1985년 미국 국방성의 지도편찬국에서 발간한 주한미군 조종사들의 항공작전용 지도에 백두산조차도 중국영토에 포함되어 있다. 만선사관에 의한 만주정책과 만주국 설립이 없었다면 비록 식민지 체제하에서도 간도는 한국 영토로 회복되었거나 현상 유지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도문제가 해결되어 국경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결국 간도협약으로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네 번째, 남북분단 원인 제공으로 한국이 간도 회복을 위한 기회를 차단한 책임이다. 일본은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중에 제안했던 한반도 분할 통치를 패망하여 물러나면서까지 분단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일본 군부에서 1945년 초부터 38선 분할을 검토하고, 만주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거나 신속하게 항복하면서, 소련을 한반도에 끌어들였다. 작전상 분계선을 경기도와 황해도 일원으로 설정하여 미국의 딘 러스크(David Dean Rusk)가 38선을 그을 때 이를 참고하도록 유도한 것이다.²⁴⁾ 결국 남북은 분단되었고, 간도협약 연장선에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이 체결되어 현재 국경선이 고착화되었다. 한국이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당사국 위치에 있지만, 남북분단이 간도 영유권 협상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의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일본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도문제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전후처리 과정에서 신생독립국으로 간도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없었다하더라도, 한일기본조약 등 각종 협상과 조약 체결과정에서 한 차례도 간도문제를 일본에 제기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본에게 책임을 묻고, 통일과 간도수복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첫째,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 추진과 함께 일본 정부에 간도문제를 중국에 제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명성왕후 사건과 을사늑약 무효선언을 참고할 만하다.

두 번째,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간도를 포함한 우리의 북방영토 면적을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경 6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상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지만 중국에 넘겨준 간도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던지, 아니면 그 대가로 판적봉환으로 넘어간 대마도를 대토로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이다. 북한과 간도수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일본과 국교 정상화 체결 시 전후보상과 함께 간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 밝히도록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중국과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북한은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 분담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24) 2004년 4월 미국 역사학회가 발행하는 격월간 학술지 <미국 역사 학보>(제109호 2회)에 발표되었다. 이 내용은 시사저널이 입수하여 2005년 4월 25일자로 보도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일본의 간도인식과 개입과정을 분석하여 간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간도문제와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은 간도를 한국 영토로 초기에는 인정하고 간도문제에 개입하였으나, 중국과 협상과정에서 간도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책임은 첫째, 간도의 중국 양도와 패망 이후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다. 두 번째, 간도 조선인의 고통과 일제강점기 잘못된 역사교육에 대한 책임이다. 세 번째, 일본의 만주국 경영으로 만주를 중국영토로 인식하게 한 책임이다. 네 번째, 남북분단 원인 제공으로 한국이 간도회복을 위한 기회를 차단한 책임이 있다.

일본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첫째,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 추진과 함께 일본 정부에 간도문제를 중국에 제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간도수복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사적 관점에서 간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간도협약 무효결의안 채택 및 중국 통보, 영토전담기구 설치, 통일 대비 간도정책 수립, 국방백서에 간도문제 명시 등의 조치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인 일본의 책임에 대하여 고찰하였지만, 자료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향후 일본의 책임을 물을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사례, 책임을 묻기 위한 아이디어 및 실천방안 수립 등 심도있는 연구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간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책임론이 간도수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박선영, “간도협약 100년 회고와 일본의 책임론, 간도협약의 역사적 쟁점과 일본의 책임”, 『중국사연구』, 제63집, 2009.
2. 신용우·김태식, “문화적 접근에 의한 대마도(對馬島)의 영토 근거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1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3.
3. 신규섭, “帝國日本の民族政策と在滿朝鮮人”, 박사학위논문, 동경도립대학대학원, 2002.
4. 이규수, “일본의 간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 『담론 201』, 제9권 제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5. 양태진, 『우리나라 영토 이야기』, 대륙연구소출판부, 2007.
6. 장계황, “간도의 영토화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2.
7. 『잃어버린 땅 간도』, 서울 : 다우출판사, 2015.
8. 조병현, “간도영유권 주장의 지적학적 범위 분석”, 『백산학보』, 제90권, 백산학회, 2011.
9. _____, “지적학의 접근방법에 의한 북방영토 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7.
10. _____, 『북방영토론』, 백산자료원, 2012.
11. 최장근, “일본의 한청국경문제 개입배경”,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1998.
12. _____, 『한중국경문제연구 - 일본의 영토정책사적 고찰-』, 백산자료원, 1998.
13. _____, “간도의 중국관할 경위 -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의 간도론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 ”, 『일본근대학연구』, 제49권, 2015.
14. 허종구·이범관·김홍택, “일제에 의한 조선 잠입 도축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8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2.
 15. 내등호차량, 「내등전집」, 제6권, 「축마서방」, 1972.
 16. 시노다 지사쿠, 「간도문제의 회고」, 『백두산정계비』, 악량서원, 1936.
 17. _____, 신영길 역,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2005.
- (접수일 2019.07.10., 심사일 2019.07.15., 심사완료일 2019.07.26.)